■ 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20 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
① 대상지역	주소	어촌계명 어촌마을명

② 일반현황	인구(명) 총 : 명 (남자 : 명, 여자 : 명)
	가구 수(호)
	②-1 어가 수(호) 면허어업 : 어가, 허가어업 : 어가, 신고어업 : 어가

③ 사업대상 어가	( ) 년도 대상 어가 수 총 ( )어가 [어촌계원 ( )명, 비어촌계원 ( )명] - 면허어업(어가), 허가어업(어가), 신고어업(어가)

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운영위원회 주 소 :

(전화 :)

위원장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	어촌마을 발전계획서 1부

작성방법

① 란은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에 소재한 어촌마을의 주소, 어촌계명 등을 적습니다.

② 란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와 가구 수를 적고, ②-1 란에는 해당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가 수를 적습니다.

③ 란은 ②-1 란의 어가 수 중에서 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어가 수를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